

제 4 조 2 호
 에 의 함
 부 차 장 전 결
 전 결 기 정

120738
 739
 기 안 용 지

체제	상사 기안처	건설국관리과	전화번호	근거서류접수일자
사황	유영해	조덕기	460	
수급	담임	관리과장	건설국장	부시장
			건설	시 장
관계	관	관	관	관
서명	관	관	관	관
기년	월	일	시	행
	1963	1. 22	1963	1. 23
분기	류호	전체 통제	종결	보존
	1242, 412			한
정수	유신		발신	정서
참	조			기 장

제 목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조정

1. 서소문~의주로 간 및 서소문~아현동 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조정 고지 합니다.

- 가. 서소문~의주로 간 도로 확장공사
- (1) 총공사비 26,424,380
 - (2) 부과액 10,569,752 (공사비 $\frac{40}{100}$)
 - (3) 감면액 9,679,803 (조례 제13조 14조)
 - (4) 부과액 6,889,949
 - (5) 부담자 서울특별시외 26명

나. 서소문~아현동 간 하수도 개수공사

- (1) 총공사비 9,333,120
- (2) 부과총액 4,668,560 (공사비 $\frac{50}{100}$ -)
- (3) 감면액 2,243,066 (조례 제13조 14조)
- (4) 부과액 2,425,494
- (5) 납입자 韓 齋果의 620 명

안 =
고시안,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38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과 부담금 징수 조례 제 2조
의 제정에 의하여 다음으로 신설 도로수익과
부담금을 부과 한다.

시 기 1963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장 운 태 일

1. 공사시공 노선 서소문 ~ 의주로 간 도로 확장공사
2. 공사이종류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
3. 공사착공년월일 1959년 10월 26일
4. 공사종공년월일 1962년 11월 30일

5. 총 공사비 26,424,380

6. 부담금 총액 10,569,752.

7. 부과 구역 파정로2가. 정동, 순화동, 서소문동
의주로 1가.

8. 부과 방법 일시 부과

안 3.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39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의
규정에 의하여 다음 로선의 도로수익자 부담금
을 부과 한다.

서기 1963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문 태 일

1. 공사 시공로선 서소문 ~ 아현동간 하수도 캐수공사.

2. 공사의 종류 확장 및 포강 공사.

3. 공사 착공년월일 1958년 12월 30일

4. 공사 준공년월일 1960년 11월 16일

5. 총 공사비 9,337,120

6. 부암금 봉인 4.665.560

7. 부와 구역 의주로 1가, 2가, 함동, 중립동, 금침로 3가

8. 부와 방범 일시 부와

아 ㅅ

수신 각 구청장 발신 시장 명예 이하여
총무와장 양 무봉

제목 도로수익과 부암금 부와

별지와 같이 하시되었음

가침 고시문 1부

아 ㄷ

수신 영보실장 발신 권설구장

제목 도로수익과 부암금 부와

별지와 같이 하시되었으니 시분에 게재하여

주시기 바람과와

가침 고시문 1부, 글